

의안번호	제 46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6월 29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67

제출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대형재난(지진)시 취약한 점,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나 현 부지는 산업단지 입주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여 밀레니엄타운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함
- 남부출장소는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추진과 도 산학협력기관(남부권 산학융합지원센터)의 신설 등으로 업무와 기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협소한 남부출장소 부지와 건물을 옥천군 행정타운 예정지와 교환하여 부지확보 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 일원(밀레니엄타운 3-6,3-7블럭)
- 사업기간 : 2020. 3. ~ 2022. 12.
- 규모 : 부지 3,004㎡, 건축연면적 2,805㎡(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비 : 13,400백만원(부지매입 3,700백만원, 신축 9,700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건물 노후화 및 사무 공간 부족 등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29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20. 8. ~ 12.
- 규 모 : 대지 5,000㎡ ※ 감정평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322백만원(공시지가 기준), 도비 100%
- 취득사유 : 남부출장소 이전 부지

《남부출장소 신축》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29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8. 9. ~ 2022. 1.
- 규 모 : 건물 2개동, 건축연면적 1,530㎡
 - 청사 1,400㎡/지상2층, 주민화합체력단련시설 130㎡/지상1층
- 사 업 비 : 5,013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남부출장소 청사 기능·업무확대 및 청사협소에 따른 신축

□ 재산의 처분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처분》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13
- 사업기간 : 2020. 8. ~ 12.
- 규 모 : 토지 939㎡, 건물 394.83㎡
- 사 업 비 : 1,234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탁상감정액 1,830백만원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변경)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3,004	3,700,000				
	건물	2건	4,335	14,712,122				
	기타							
1	토지	창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 일원	3,004	3,700,000	2021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 청사 부지	충북개발공사	
	건물	창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 일원	2,805	9,700,000	2022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 청사 신축	충북개발공사	
	기타							
2	토지							
	건물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29 등 5필지	1,530	5,012,122	2022	남부출장소 신축	옥천군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